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인사혁신처장

1.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3. 11. 3.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외무공무원법」 제27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 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 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 12. 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 12. 2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단위 (붙임1.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참조)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2023. 11. 3. 예정)**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등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2023. 11. 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경력은 포함

▶ 공중보건역사·병역판정검사전담역사·군의원, 공익법무관·군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장교 의무복무기간(단기)은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인정

▶ 서류전형 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주 40시간 기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주 20시간 시간제로 4년간 근무한 경우: 4년 ×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응시자격요건 중 '자격증'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 '관리자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력을 의미함

< 부서단위 책임자 >

- ① **(조직체계)**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
 - i)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인정하지 않음(임시조직·TF팀 등)
 - ii)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위탁업체 직원, 인턴, 임시직 제외)
- ② **(업무권한)** 부서장으로서 인사권(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③ **(근무형태)**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
- ④ **(증빙의무)** ① ~ 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조회과정에서 위 사항(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학위·자격증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하되, 관련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 학위논문으로 판단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 예정일(2023. 11. 3. 예정)**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위의 **[경력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기 타 】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3. 4. 21.)**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2020. 4. 20. 부터 2023. 4. 20. 까지 위의 **【경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23. 9. 1. 예정)** 전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21. 9. 2.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3. 9. 1.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 SNULT, 신HSK, JPT)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최종시험 예정일(2023. 11. 3. 예정)** 전에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 사전등록 방법: 본 공고문 8페이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참고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서류전형등록 마감일(2023. 9. 1.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붙임1] 참조**

2.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합니다.
 - 과목: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문항 및 시간: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응시요건(경력·학위·자격증)을 두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함)와 해당 응시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당초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서류전형

-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합니다.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서류전형 기준 >

- ① 공무원 적합성(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②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③ 직무역량 및 성과 ④ 우대요건(보유여부 판단)

- 공통 우대요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1·2·3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23. 9. 1. 예정)**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으로 기재된 선발단위에 한하여 우대됩니다.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평정기준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불합격 기준 >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

※ 면접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3. 시험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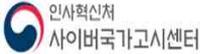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시험	2023. 7. 14.(금)	2023. 7. 22.(토)	2023. 8. 25.(금)
서류전형	-	-	2023. 10. 6.(금)
면접시험	2023. 10. 23.(금)	2023. 11. 2.(목)~3.(금)	2023. 12. 29.(금)

※ 시험 일정·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만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 (일자/참여방법) 5. 24.(수)~25.(목) / 실시간 유튜브(채널명: 인사처 TV) 참여
- (내용) 부처별 업무현황, 조직문화, 채용직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사담당자와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궁금증 해소
- 자세한 사항은 5월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안내 예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메인화면의 민간경력채용(5급·7급) 원서접수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 채용설명회 및 원서접수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시험종합안내](#) | [온라인 민원](#) | [사이트맵](#) | [English](#)

시험안내	원서접수	시험문제/정답	서류전형/면접시험	채용후보자	시험통계/자료실	마이페이지	
2023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		2023년도 경력경쟁채용시험					
민간경력채용5급	06.05.-06.12. 원서접수 📧	07.14. 시험장소공고	07.22. 필기시험	08.25. 합격자발표	10.06. 서류전형합격자발표	11.02.~11.03. 면접시험	12.29. 최종합격자발표
민간경력채용7급	06.05.-06.12. 원서접수 📧	07.14. 시험장소공고	07.22. 필기시험	08.25. 합격자발표	10.06. 서류전형합격자발표	1.07.~11.10. 면접시험	12.29. 최종합격자발표
지역인재7급	02.01.-02.03. 원서접수	02.24. 시험장소공고	03.04. 필기시험	03.24. 합격자발표	04.26. 서류전형합격자발표	05.12.~05.13. 면접시험	05.26. 최종합격자발표
지역인재9급	07.25.-07.28. 원서접수 📧	08.18. 시험장소공고	08.26. 필기시험	09.22. 합격자발표	11.20. 서류전형합격자발표	11.30.~12.02. 면접시험	12.22. 최종합격자발표
중증장애인		03.17.-03.23. 원서접수		05.17. 서류전형합격자발표	06.08.~06.09. 면접시험	08.04. 최종합격자발표	

"중(📧)"을 클릭 한 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 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기 간: 2023. 6. 5.(월) 09:00 ~ 6. 12.(월) 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 취소 가능기간: (1차) 6. 5.(월) ~ 6. 15.(목) / (2차) 7. 10.(월) ~ 7. 12.(수)

안 내 사 항

- 응시수수료(1만원) 외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응시원서는 **1회(1개 선발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필기시험 시행일이 동일한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상세한 원서접수 방법 및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증빙서류 제출 포함)에 대한 안내는 5.24.(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 메뉴에 공지 예정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인터넷으로 등록

- 대상자: 어학성적이 우대요건으로 설정된 선발단위에 응시하고, 2021. 9. 2.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 (2023. 9. 1. 예정)까지 접수(등급)가 발표된 영어(TOEIC, TOEFL, TEPS, G-TELP), 제2외국어(SNULT, 신HSK, JPT) 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 인증 받으려는 응시자
 -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어학성적은 서류전형 등록 시에도 등록 가능
- 방 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
- 기 간: 2023. 5. 1.~10. / 6. 1.~10. / 7. 1.~10. / 8. 1.~10.에 등록가능

다.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인터넷으로 등록

- 방 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등록
- 기 간: 2023. 8. 25.(금) 09:00 ~ 9. 1.(금) 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내 용: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경력,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이력 사항 및 추가서류 등록
 - 등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 서류전형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라.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인터넷으로 등록

- 방 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로그인 → 서류전형/면접시험 →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업로드
- 기 간: 2023. 10. 6.(금) 09:00 ~ 10. 13.(금) 18:00
- 내 용
 - 경력, 학위, 자격증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시험일시·장소 등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나.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6. 기타 참고사항

- 가.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사무관, 전문경력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관)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호봉 책정 관련 안내 >

-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다.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 및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습니다.
- 라. 선발단위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예정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마.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직무 단위 선발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부서)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직렬(류) 단위 선발 최종 합격자는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바. 최종합격자는 2024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천 또는 진천)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 필기시험 점수를 사전공개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23. 7. 14. 예정)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아.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의 편의 강화를 위해 **기출문제(최근 3년) 모의고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교시별 시험응시 후 답안을 제출하면 과목별 점수와 문항별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모의고사'에서 시험응시 클릭

- 자.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문의처>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 201 - 8375, 8376, 8374

7. 선발단위별(직류/직무분야) 선발예정인원: 63명

※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 1] 확인

《직렬(류)별》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선발단위
계			24	
일반행정	행정사무관(일반행정)	인사혁신처	1	501
법무행정	행정사무관(법무행정)	국가인권위원회	1	502
쟁송 및 법무(국세)	행정사무관(재경)	국세청	2	503
법무행정	행정사무관(법무행정)	법제처	4	504
법제 및 송무(보건복지)	행정사무관(법무행정)	보건복지부	1	505
법무행정	행정사무관(일반행정)	통일부	1	506
법무행정	행정사무관(법무행정)	환경부	1	507
재경	행정사무관(재경)	국무조정실	1	508
무역구제	행정사무관(국제통상)	산업통상자원부	2	509
외교전문(과학기술)	외교통상5등급	외교부	2	510
임상관리	의무사무관(일반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	3	511
보건의료정책	보건사무관(보건)	질병관리청	2	512
감염병 역학조사	보건연구관(공중보건)	질병관리청	2	513
폐기물	환경사무관(폐기물)	환경부	1	514

《직무분야별》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선발단위
계			39	
국제통상(동북아)	행정사무관(국제통상)	산업통상자원부	1	515
국제통상	행정사무관(국제통상)	산업통상자원부	1	516
기후 변화협력	행정사무관(국제통상)	환경부	1	517
일기예보 및 기상역학	기상사무관(기상)	기상청	1	518
기술표준정책(기후변화예측)	기상사무관(기상)	기상청	1	519
법무행정	행정사무관(법무행정)	국무조정실	1	520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임용예정기관	인원	선발단위
쟁송 및 법무(조세)	행정사무관(재경)	국무조정실	1	521
발전사업 분쟁소송	행정사무관(법무행정)	산업통상자원부	1	522
법제 및 송무	행정사무관(법무행정)	질병관리청	1	523
국제해양	행정사무관(법무행정)	해양수산부	1	524
보건의료정책(의학)	보건사무관(보건)	보건복지부	4	525
보건의료정책(한의학)	보건사무관(보건)	보건복지부	1	526
원자력 안전 정책	공업사무관(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1	527
원자력 안전 정책	공업사무관(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1	528
의무	의무사무관(일반의무)	법무부	2	529
환자 진료 및 연구	의무사무관(일반의무)	질병관리청	2	530
중대재해예방 분야	공업사무관(일반기계)	해양경찰청	1	531
비상안전	전문경력관 가군	환경부	1	532
기술표준정책(전자)	공업사무관(전자)	산업통상자원부	1	533
자율주행	공업사무관(전기)	특허청	1	534
개인정보 유출·침해조사	전산사무관(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535
빅데이터 분석	전산사무관(데이터)	국방부	1	536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산사무관(전산개발)	보건복지부	1	537
데이터 기반 행정	전산사무관(전산개발)	보건복지부	1	538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전산사무관(전산개발)	특허청	1	539
국가통계 방법론 연구	통계사무관(통계)	통계청	1	540
공정거래 사건 및 정책(시장감시)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공정거래위원회	1	541
공정거래 사건 및 정책(기업거래)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공정거래위원회	1	542
감사업무 법제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543
보험 리스크관리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544
홍보 기획(온라인)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국방부	1	545
기술표준정책(화공)	공업사무관(화공)	산업통상자원부	1	546
우정사업 재무회계	행정사무관(일반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547
국제조세	행정사무관(재경)	국세청	1	548